

■ 법률 칼럼

601 A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

불법 입국을 했거나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관계로 영주권 신청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최근 601A 면제를 통하여 영주권을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601A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신청대상자

먼저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경우입니다. 이민국이나 세관을 거치지 않고 미국에 불법 입국한 사람들, 또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을 했으나 체류 신분을 유지 못한 사람들 중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을 제외한 사람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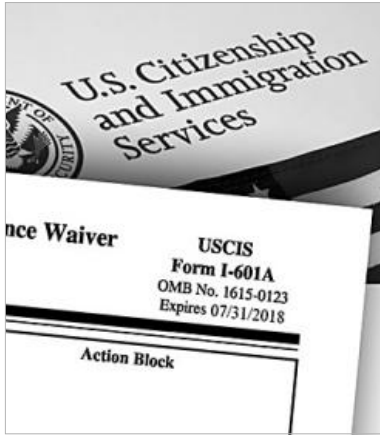
2. 신청 자격 요건

1)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지닌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위의 대상자들이 중에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지닌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601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이미 승인이 난 이민청원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면제 신청을 위해서는 이민 승인이 난 이민청원서가 있어야 합니다. 승인 받은 해당 이민청원서의 종류는



가족이민(I-130)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취업이민(I-140)과 종교이민(I-360) 등의 이민 청원서가 모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I-601A waiver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이민(I-130), 취업이민(I-140), 종교이민(I-360) 등의 이민청원서의 승인은 받았으나 밀입국을 했거나 또는 비자 기간을 어겨 현재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 없어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3) 이민청원서의 영주권 문호가 오픈돼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민청원서의 승인만으로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고 이민청원에 우선일자가 있는 경우는 그 우선일자가 돌아와서 영주권 문호가 열려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National Visa Center에서 영주권 문호가 오픈돼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라는 편지를 받고 비자수수료를 지불한 영수증이 있어야 601A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치과 칼럼

임플란트 즉시 식립술

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자니 어감이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임플란트 즉시 식립 (immediate implant placement)이라는 말은 치아를 발치한 후에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술식을 말합니다. 임플란트 치료의 일반적인 단계는 치아를 발치한 후 발치한 부위가 치유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즉 발치와의 치유를 통해 임플란트를 지지할만한 뼈가 생성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플란트 식립법입니다.

임플란트 치료 기간이 짧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연구하다 나온 술식이 즉시 임플란트 식립술입니다. 보통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발치와가 치유되는 기간은 약 3-6개월 정도입니다. 임플란트를 바로 심게 되면 바로 이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임플란트 즉시 식립 이유가 치아 발치 후 발생할 수 있는 잇몸과 뼈 조직의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 치아를 둘러싸고 있던 잇몸과 뼈의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조직의 재형성 (remodeling) 과정을 통해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임플란트를 바로 식립하게 되면 임플란트가 치아를 뺀 부위에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변화의 양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 즉시 식립술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플란트를 발치 후 바로 심으려면 발치한 부위에 어느 정도의 뼈가 있어서 임플란트가 단단히 유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발치와의 아래에 있는 뼈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고정하기 때문에 이 부위의 뼈의 양이 제한적인 경우는 임플란트 즉시 식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뼈의 양이 제한적이라는 말은 보통 발치해야 할 치아 아래에 상악동이나 신경관 등 기타 중요한 해부학적인 구조물들이 있어서 임플란트를 바로 식립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mm의 뼈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해부학적인 구조물로부터 2mm의 안전 공간을 확보해하기 때문에 최소한 5mm의 이용 가능한 뼈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연조직의 양입니다. 일

반적으로 치아의 직경이 임플란트의 직경보다 크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의 가용한 연조직의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임플란트를 심고 임플란트와 발치와의 뼈 사이 공간에 뼈이식을 해야 합니다. 이 뼈이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뼈 이식재가 잘 고정되고 보호되어 뼈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혈관과 세포 그리고 기타 조직들이 자라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 역할을 주로 하는 것이 잇몸인데 발치 후 임플란트를 바로 심게 되면 이 연조직의 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뼈 이식 외에 연조직 이식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이 연조직 이식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발치와의 크기가 임플란트에 비해서 너무 큰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어금니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연조직의 양이 아주 많이 모자라는 경우는 발치와가 치유되는 기간을 충분히 두어서 뼈 조직 외에 잇몸 조직도 치유된 후 임플란트를 심는 게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발치와 하반에 뼈의 양이 충분하데 발치와의 크기가 임플란트 크기보다 아주 큰 경우 일반적인 뼈 이식 술식을 병행하여 임플란트를 심기도 합니다. 발치와의 조직을 충분히 유지하기 위해서 발치와에 임플란트 식립 없이 뼈 이식을 하기도 하는데 이 술식을 병합하여 임플란트 즉시 식립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즉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뼈 이식을 하고 그 위에 흡수성 막으로 발치와 뼈 이식재와 임플란트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임플란트가 심기는 깊이입니다. 발치 후 바로 임플란트를 심더라도 발치와의 상부 조직은 재형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혈액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조직들은 흡수되어 상실되는데 이 결과로 발치와 상부가 조금 내려 앉게 됩니다. 이 양을 고려하여 임플란트를 심어야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YON DENTAL GROUP
Gene H. Park DDS, MS
한인 치주 임플란트 수술 전문의
Fullerton Office: (714) 519-3932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 (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PWC 근무

PREMIER
TAX
GROUP

(714)530-0030
4128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